

대학원 수학교육학과 운영 내규

2025.09.01. 개정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수학교육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데 목적을 둔다.

제2조 (적용범위와 효력)

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수학교육학과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,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. 또한 내규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내용은 모두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따른다.

제2장 자격시험

제3조 (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)

- ① 일반대학원 수학교육학과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수학교육학과 내규에 따라 종합학력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, 종합학력시험 면제신청기간에 증빙이 가능해야한다.
- ②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하면 종합학력시험 면제 자격을 부여한다.
 1.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(교신저자, 제1저자포함) 논문 1편 게재
 2. 전국규모 학술대회에서 발표 1회
- ③ 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한 가지를 만족하면 종합학력시험 면제자격을 부여한다.
 1.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(교신저자, 제1저자포함) 논문 2편 게재
 2. 전국규모 학술대회에서 서로 다른 주제로 2회 발표 및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(교신 저자, 제1저자포함) 논문 1편 게재

제4조 (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)

① 종합학력시험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필수과목: 수학기초론, 수학교육과정론(수학교육과정과 평가), 수학교육연구방법론
2. 선택과목: 필수과목을 제외한 수학교육학과에서 개설되는 교과목
3. 석사학원과정의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필수과목 1개와 선택과목 1개로 한다.
4. 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의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1개로 한다.(단, 필수과목에 대한 시험이 불가한 경우 일반대학원 주임교수가 대체 과목을 선정한다.)
5. 종합학력시험 과목은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수학교육학과에서 개설되는 교과목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, 지도교수의 과목은 최대 1개 선택 가능하다.

②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석·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가 선택한 과목의 담당교수가 종합학력 시험 과목의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며, 모든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출제한다.
2. 종합학력시험의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으로 한다.

제5조 (외국어시험 과목)

① 외국어시험은 각 학위과정 1학기를 이수한 후부터 응시할 수 있다. 다만, 편입학의 경우 전적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합격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
② 외국어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내국인 학생은 영어과목만 응시 가능하다.
2. 외국인 학생은 영어 또는 한국어 중에 선택가능하며, 영어 선택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만 선택가능하다.

③ 외국어시험의 면제조건은 일반대학원 학칙 및 시행제칙을 따른다.

제3장 학위과정

제6조 (석사학위 취득 방법의 선택)

석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석사학위 취득 방법을 다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.

- ① 학위논문 작성: 석사학위 논문 선택하여 제출한다.
- ② 연구논문 작성: 학위논문을 대체하여 연구논문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2학기 말에 학위취득 방법을 연구논문으로 선택하여야 한다.
 1. 연구논문 작성 자격: 39학점 이수(전공 30학점 + 연구지도 9학점) 및 평균 80점 이상 (지도교수의 과목 또는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과목으로 전공 6학점을 추가 취득해야 함)
 2. 연구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청구하는 경우, 예비 발표 시점에 연구재단등재지에 주저자로 게재 또는 게재 확정된 1편 이상의 논문실적(100% 이상의 논문실적)을 제출하여야 한다.
 3. 연구재단등재지 1편은 100%이다. 저자 수에 따른 환산율은 다음과 같으며, 지도교수는 공동연구자의 수에서 제외한다.

저자 수	1인	2인	3인	4인 이상
환산율	100%	70%	50%	30%

제4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

제7조 (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)

- ①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한 자는 연구계획서를 구술로 발표해야 하며, 이를 ‘Proposal’ 이라 한다.
- ②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학위 취득학기 중 전임교원(지도교수 포함) 및 일반대학원 수학교육학과에 재학중인 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계획서를 구술로 발표해야하며, 이를 예비발표로 대체한다.
- ③ 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의 경우 학위 취득학기 전에 전임교수(지도교수 포함) 및 일반대학원 수학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계획서를 구술로 발표해야 한다.
- ④ 연구계획서 발표의 심사통과여부는 지도교수가 결정한다.

제8조 (예비발표)

- ① 예비발표는 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만 시행하며, 연구계획서 심사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예비발표의 자격이 주어진다.
- ② 예비발표는 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의 학위 취득학기 중 이루어지며, 전임교원(내부 심사위원 포함) 및 일반대학원 수학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자가 참석한 가운데 구술로 발표해야한다.
- ③ 예비발표의 통과여부는 내부 심사위원이 결정한다.

제9조 (논문심사위원)

- ① 논문심사위원 대학원위원회가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주임교수가 추천한다.
- ② 논문심사위원에는 지도교수가 포함되어야 하며,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을 할 수 없다.
- ③ 학위과정에 따른 논문심사위원의 인원은 일반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을 따른다.

제5장 학과 운영위원회

학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의사결정은 학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교수 1/2 이상의 참석(위임 포함)과 참석 교수의 2/3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2020.12.11.

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수학교육학과 주임교수

